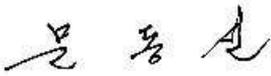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
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4년 3월 3일

군산시 조례 제1126호

군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

1.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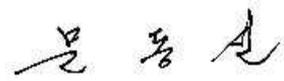
-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5.23)으로 폐지됨에 따라 군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운영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4년 3월 3일

군산시 조례 제1127호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박물관"이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야외 및 내부, 인근 근대건축물 전시공간과 진포해양테마공원을 포함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는 [별표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

제8조제1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상 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제8조제1항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시설사용·설치)①박물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카페테리아
2. 뮤지엄샵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 랑 료(제7조 제1항과 관련)

(단위: 원)

【 통합권(박물관/조선은행/18은행/진포해양테마공원)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3,000	2,000	
청소년,군인	2,000	1,000	
어 린 이	1,000	500	

【 개별권(박물관)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2,000	1,000	
청소년,군인	1,000	700	
어 린 이	500	300	

【 개별권(진포해양테마공원)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1,000	700	
청소년,군인	700	400	
어 린 이	300	200	

【 개별권(조선은행)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500	300	
청소년,군인	300	200	
어 린 이	200	100	

【 개별권(18은행)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500	300	
청소년,군인	300	200	
어 린 이	200	100	

[별표 2]

관람료 감면(제7조 제3항과 관련)

(단위: 원)

【 통합권(박물관/조선은행/18은행/진포해양테마공원)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2,000	1,000	
청소년,군인	1,000	500	
어 린 이	500	400	

【 개별권(박물관)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1,000	500	
청소년,군인	500	300	
어 린 이	300	200	

【 개별권(진포해양테마공원)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500	300	
청소년,군인	300	200	
어 린 이	200	100	

【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 】

○ 국가시책에 따른 공공시설 입장시 각 사업별 별도 할인을 적용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p> <p>1. “박물관”이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야외 및 내부전시공간을 말한다.</p> <p>2 ~ 9 (생략)</p>	<p>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p> <p>1. “박물관”이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야외 및 내부, 인근 근대건축물 전시공간과 진포해양테마공원을 포함한다.</p> <p>2 ~ 9 (현행과 같음)</p>
<p>제7조(관람료)①박물관의 전시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③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p> <p>④(생략)</p>	<p>제7조(관람료)① ----- ----- -----</p> <p>②(현행과 같음)</p> <p>③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p> <p>④(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8조(무료관람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 7 (생략) <p>②(생략)</p>	<p>제8조(무료관람 등)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상 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3.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 7 (현행과 같음) <p>②(현행과 같음)</p>
<p>제32조(시설사용)박물관의 기획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카페테리아 등 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p>	<p>제32조(시설사용·설치)① 박물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카페테리아 2. 뮤지엄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p>③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p>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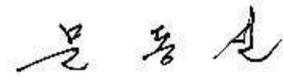
- 박물관 운영범위를 인근 근대건축물 및 진포해양테마공원까지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을 관리하고자 함
- 박물관 관람료 및 감면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시책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무료관람대상자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의 혜택범위를 넓히고자 함
- 박물관 시설 사용 및 별도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운영관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박물관 이용자의 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박물관과 근대건축물(조선은행, 일본제18은행) 및 진포해양테마공원 연계 운영에 따른 통합관리 근거 마련
 - 박물관 범위 확대
- 통합운영관리에 따른 관람료 구분 기준 마련 및 요금 변경
 - 통합권, 개별권(박물관,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선은행, 18은행) 이원화 적용
- 국가시책에 따른 관람료 감면대상자 확대 적용 근거 마련
 - 그린카드 소지자 등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무료관람 범위 확대
- 박물관 시설 사용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 마련
 - 시설물 사용 허가 근거, 설치 가능 시설물 예시화 등
- 박물관 이용자의 구분 조정
 - 청소년/어린이, 군인 ⇒ 청소년, 군인/어린이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4년 3월 3일

군산시 조례 제1128호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관할 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1항에 의한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납부금액"이란 택지 등의 개발에 따른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납부대상자”는 2호의 사업시행자 중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내려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납부계획서 제출 및 납부금액 산정 등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납부금액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예정 택지의 건립 예정 주택 및 계획 인구 현황
5. 개발예정 택지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6. 생활폐기물 발생예정량(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사료화, 퇴비화가 가능한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7.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자 및 납부방법 등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 면적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 면적을 각각 산출한 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처리시설들의 부지면적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 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량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 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 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 ~10톤/일 경우 : 1.2
- 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 ~29톤/일 경우 : 1.1
- 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 ~49톤/일 경우 : 1.0
- 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 ~99톤/일 경우 : 0.9
- 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 제8조(납부금액 부과 및 징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징수한다.
- ② 시장은 납부대상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장소를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 기간 중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
- ④ 시장은 납부대상자가 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제3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9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 제7항에 의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자원순환과장
3. 기금출납원 : 청소행정계장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외부 인사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징수,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 적

- (1)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그에 따른 징수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및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 향상 도모

나. 납부계획서 제출 및 납부금액 산정

- (1)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군산시장에게 제출
- (2)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의 규모, 시설부지 매입소요 비용, 시설 설치 소요 비용을 산정하여 납부금액을 산출하고 납부고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

- (1)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사업 수행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을 조성 한다.
- (2) 기금의 용도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 (3)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금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 (4) 기금의 수입·지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5)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관리대장 및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6)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라. 위원회

- (1) 위원회의 구성은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 군산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인사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인사
- (3) 기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의 결산
 -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4)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5)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4년 3월 3일

군산시 조례 제1129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호,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 별표3 :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 태양에너지에 한한다.)
-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 "별표4"과 같다
 - 별표4 :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 태양에너지에 한한다.)
-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과 같다
 - 별표5 :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 태양에너지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p> <p>【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17. (생략)</p> <p>【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19. (생략)</p> <p>【별표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19. (생략)</p>	<p>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p> <p>【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17. (현행과 같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재2호 가목 태양에너지에 한한다.)</p> <p>【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19. (현행과 같음)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재2호 가목 태양에너지에 한한다.)</p> <p>【별표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19. (현행과 같음)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재2호 가목 태양에너지에 한한다.)</p>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343호
------	--------

발의년월일 : 2014년 1월 일

발 의 의 원 : 김우민, 김경구, 진희완
최인정

대표발의의원 : 김우민

1. 제안 이유

-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 기반 구축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욕구에 부응 하고자 주거지역내 발전시설 허용 함.

2.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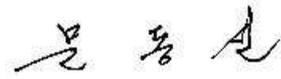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안 제30조 제3호, 제4호, 제5호)
-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 별표3 :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 태양에너지에 한한다.)
-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 "별표4"과 같다
 - 별표4 :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 태양에너지에 한한다.)
-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과 같다
 - 별표5 :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 태양에너지에 한한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4년 3월 3일

군산시 조례 제1130호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 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을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 하여 주차 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 그리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장은 법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써 법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재래시장
3.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4.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지구

·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시장은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차장법」 (이하“법”이라한다)제8조의2”를 “법 제8조의2”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 제3조”를 “「도로교통법」 제4조”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제4호 중 “18평방미터”를 “18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의2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개정 98.11.26, 99.10.06, 2004.07.30, 2008.07.15, 2009.12.29>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 당 1대 (시설면적 / 8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 당 1대(시설면적/100㎡) 단, 예식장, 장례식장은 75㎡ 당 1대 (시설면적/75㎡)
3.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20㎡ 당 1대(시설면적/120㎡)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60㎡ 당 1대 (시설면적/160㎡) 건축연면적 1,000㎡ 미만인 경우에는 200㎡ 당 1대 (시설면적/200㎡)
5.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인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 $[1 + \{(시설면적 - 150㎡) / 100㎡\}]$
6.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7.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 : 전용면적 3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와 세대당 0.7대 중 많은 대수 적용
8.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 x 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타석의 수 x 1.5)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9.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 당 1대(시설면적/300㎡)
10. 창고시설	시설면적 350㎡ 당 1대(시설면적/350㎡)
11.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 당 1대(시설면적/250㎡)

(비 고) ---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생략) <신설>	제2조(적용 범위)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을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상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
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
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
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
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 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
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
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서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
와 갱신 그리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
로 정한다.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①시장은 법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
로써 법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신 설>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재래시장

3.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4.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지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시장은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군산시장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중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서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한다)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 대해서-----
 -----.

③ -----
 ----- 법 제8조의2 -----
 ----- 대해서-----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 -----

1. · 2. (생 략)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 5. (생 략)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다.

1.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월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최초 개시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수료를 사전교부 할 수 있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생 략)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

1. · 2.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거부 금지) -----
-----해당하
는 -----
-----.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 「도로교통법」 제4조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

-----.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그 밖의 -----

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 2. (생략)

③ ~ ⑤ (생략)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③ (생략)

④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6미터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일방통행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군산시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② · ③ · ④ (생략)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생략)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규칙 -----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조례에서 -----

②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생 략)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 미터로 한다.

③ (생 략)

제17조의2(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의 하역, 기타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기준 주차대수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18제곱미터-----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그 밖에 -----

-----.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주차장 조례 관련 법적사항 조항 변경
- .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 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3년) 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함.
 - ▶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만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어 구체적 이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기보다 군산시 주차장 조례에 조항을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장 정책의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적 방향성 및 주차환경 개선의 지속적 추진 근거를 확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원룸형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의 구체화 (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신설)

○ 「주차장법」 제3조~제4조의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등) 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분의 1로 강화

(안 제13조의2 제2항의 별표4 제7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2012.06.29)

별표4 수정 “명칭변경 및 오타 수정”

○ 명칭변경 : 요양소=>요양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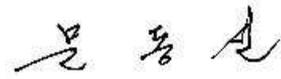
별표 4의 시설물란 중 “2.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 병원을 제외한다)”을 “2.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 병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 오타수정 : 다가주주택=>다가구주택

별표 4의 시설물란 중 “6. 다가주주택”을 “6. 다가구주택”으로 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 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4년 3월 3일

군산시 조례 제1131호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사업장 명칭은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으로 하고 위치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권역별 2개 지역을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 권역별 사업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권역	사업장 명칭	위 치
서부지역	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서부사업소	옥서면 옥봉들 3길 12
동부지역	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장 동부사업소	임피면 서원서곡로 584

제3조 2호중 “대여한”을 “대여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권역별 사업장이란” 군산시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 주거하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서부사업소” 또는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동부사업소”을 말한다.

5. “배달료”란 임대농업기계의 운반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단 배달료 책정기준은 사용전 또는 사용후 편도이용을 기본으로 정한다.

6. “세척료”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후 임대사업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조제2항 중 “센터소장”을 “소장”으로 하고, “사업”을 “사업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내구연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으로 인한 조기노화 등을 감안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정하는 기간의 1/2로 한다.

제6조 중 “4인 내외”를 “개소당 4인 내외”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임대료”를 “임대료, 배달료, 세척료”로 하고, “매년 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필요시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1항중 “관내 농업인이어야 하며”를 “군산시 거주 농업인과 타지역 거주농업인이 경작지를 군산시에 두고있어야 하며”로 하고, “센터소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10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제9조 내지 제16조로 하고, 제9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제1항4호중 “입힌 경우”를 “입히고 방치할 경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2항중 “이를 변상” “원상복구등 이를 변상”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근지역의 농업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신 임차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제16조(종전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14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1명을 두

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군산시 농업인단체 대표
2. 농기계 관련분야 전문가
3. 읍면 이장협의회 대표
4. 시의원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2. 임대 농기계 기종 선정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세척료, 배달료 포함)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총전의 제9조)제1항중 ① 중 “센터소장”을 “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생략</p> <p>제2조(명칭과 위치) <u>사업장 명칭은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수리 센터” 로 하고 위치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u></p>	<p>제1조(목적) <u>현행과 같음</u></p> <p>제2조(명칭과 위치) <u>사업장 명칭은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으로 하고 위치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권역별 2개 지역을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 권역별 사업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권역</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장 명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부 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서부사업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옥서면 옥봉들 3길 1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동부 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장 동부사업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임피면 서원서곡로 584</td> </tr> </tbody> </table>	권역	사업장 명칭	위 치	서부 지역	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서부사업소	옥서면 옥봉들 3길 12	동부 지역	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장 동부사업소	임피면 서원서곡로 584
권역	사업장 명칭	위 치								
서부 지역	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서부사업소	옥서면 옥봉들 3길 12								
동부 지역	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장 동부사업소	임피면 서원서곡로 584								
<p>제3조(정의)</p> <p>1. 생략</p> <p>2. "임대농업기계"란 본 조례에 따라 <u>대여한</u> 농업기계를 말한다.</p> <p><신 설></p> <p>3.</p> <p><신 설></p>	<p>제3조(정의)</p> <p>1. <u>현행과 같음</u></p> <p>2. "임대농업기계"란 본 조례에 따라 <u>대여하는</u> 농업기계를 말한다.</p> <p>3. "<u>권역별 사업장이란</u>" 군산시의 <u>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 주거하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서부사업소” 또는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동부사업소” 을 말한다.</u></p> <p>4. "임대료"란 임대농업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5. "<u>배달료</u>"란 임대농업기계의 운반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신 설>

4. 생략

5. 생략

제4조(기능) 생략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본 사업에
----(이하 “센터소장” 이라 한다)
이 한다.

② 센터소장은 본 사업 소요되는
-----운영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신 설>

제6조(업무담당 및 관리요원) 본 사
업의-----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요원 등 4인 내외
로 운영·관리자를 구성한다.

제7조(임대 및 임대료)① ~ ② 생략

다.

단 배달료의 책정기준은 사용전
또는 사용후 편도이용을 기본으로
정한다.

6. "세척료"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
후 임대사업장에 설치된 세척시설
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대가로 부
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본 사업에
-----(이하 “소장” 이라 한다)
이 한다.

② 소장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내
구연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으로
인한 조기노화 등을 감안하여 농업
기계화촉진법에서 정하는 기간의
1/2로 한다.

제6조(업무담당 및 관리요원) 본 사
업의-----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
기계교관, 수리요원 등 개소당 4인
내외로 운영·관리자를 구성한다.

제7조(임대 및 임대료)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임대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관내 농작업료 추이 등을 분석하여 매년 군산시산학협동심의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한다.

④ ~ ⑤ 생략

제8조(임대기준 및 사업운영) ① 임대신청은 관내 농업인이어야 하며, 임대사업의 ----- . 다만, 센터소장이 지역특화사업육성----- 임대사용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0조(지연금 및 부대비용) ① 임대사용 후 농업기계를 계약일 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 2 및 ②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① 1 ~ 3 생략

4. ----- 입힌 경우

5. 생략

② 생략

제14조 ① 생략

② 임차인이-----망실 또는 훼손

③ 임대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 배달료, 세척료는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관내 농작업료 추이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임대기준 및 사업운영) ① 임대신청은 군산시 거주 농업인과 타지역 거주농업인이 경작지를 군산시에 두고있어야 하며, 임대사업의 ----- . 다만, 소장이 지역특화사업육성-----임대사용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연금 및 부대비용) ① 임대사용 후 농업기계를 계약일 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 2 및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 ① 1 ~ 3 현행과 같음

4. ---- 입히고 방치할 경우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차인이-----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생략

제16조 1 ~ 4 생략

<신 설>

제17조(운영 심의) 본사업의-----
“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할 수 있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1 ~ 4 현행과 같음

5. 인근지역의 농업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신 임차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14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군산시 농업인단체 대표
2. 농기계 관련분야 전문가
3. 읍면 이장협의회 대표
4. 시의원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2. 임대 농기계 기종 선정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세척료, 배달료 포함)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리 및 수리비) ① -----
 ----- 수립하여 센터소장의 책임 하
 에 시행하여야한다.

② 생략

제18조 생략

제19조 생략

이하생략

제17조(수리 및 수리비) ①-----
 ----- 수립하여 소장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 현행과 같음

이하 현행과 같음

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장의 확대운영에 따른 임대서비스 개선
- 새로운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에 따른 명칭 부여
- 농업기계 임차농업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세척료, 배달료를 추가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 농기계임대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2. 주요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장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사업장명칭을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사업소 및 동부사업소로 칭함
- 농기계임대료 납부는 임대료를 포함하여 배달시 배달료, 세척시 세척료 납부로 서비스 확대
- 기존 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하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를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하여 전문성 강화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농기계임대사업시행지침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이유

- 가. 현행 근무성적평정시기가 중앙부처 평가시기 및 업무종료 시기와 맞지 않아서 근무평정시기 조정 필요
- 나. 실적가점 항목 중 현안부서는 처음 신설할 때 보다 의미가 퇴색 되었고 부서가 안정화 되었음으로 폐지 필요
- 다. 또한 공모사업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공모사업 유치로 인한 가점 부여 예산 확보액 상향 조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근무성적평정 시기 조정
 - 1) 현행 4월30일, 10월31일 근평시기를 6월30일, 12월31일로 변경
- 나. 기피부서와 현안부서 조정
 - 1) 기피부서 명칭을 격무부서로 변경
 - 2) 현안부서(인재양성계,투자지원계,관광진흥계) 가점제 폐지
- 다.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가점부여 예산확보액 조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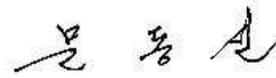
현 행	조 정
- 5억원 이상 : 1.0	- 50억원 이상 : 1.0
- 1억원이상~5억원미만 : 0.8	- 40억원이상~50억원미만 : 0.8
- 3천만원이상~1억원미만 : 0.4	- 30억원이상~40억원미만 : 0.6
	-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 0.4
	- 1억원이상~20억원미만 : 0.2

3. 참고사항

- 가.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나. 신·구문대비표 : 따로 붙임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군산시장



2014년 3월 일

군산시 훈령 제310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5급이하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5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월30일과 10월31일”을 “6월30일과 12월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6급이하 일반직·지도사·기능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6급이하 일반직·지도사 및 별정직공무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조항 중 “6급이하 일반직·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6급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지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무성적평정자”를 “근무성적평정서”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인사담당”을 “인사계장”로 한다.

제14조 중 “기피·현안부서 근무자”을 “격무부서 근무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7조제2항”을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7조제3항”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 4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

실 적 가 점 기 준(제11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가 점	비 고
예산절감 유 공	○ 제도·기술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 5억 원 이상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3천 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1.0 0.8 0.4	
창안제도 우 수	○ 직무와 관련하여 창안상을 수상한 자 - 대통령 이상 - 국무총리 - 장 관 - 도 지 사 - 시 장	1.0 0.6 0.4 0.3 0.2	
업무추진 유 공	○ 소관업무 관련 기관표창 수상한 부서 (계장 및 담당자 각 1명) - 중앙 단위 · 최 우 수 · 우 수 - 도 단위 · 최 우 수 · 우 수 - 시 단위 · 최 우 수 · 우 수 ○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에 기여한 자 (계장 및 담당자 각 1명) - 예산 확보(국도비) · 50억 원 이상 · 4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0억 원 이상 ~ 40억 원 미만 · 2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0.8 0.6 0.6 0.4 0.4 0.2 1.0 0.8 0.6 0.4 0.2	
격무부서 근무 가점	○ 격무부서 근무 - 1년 이상 근무자 0.5점 - 1년 초과 매 6월마다 0.5점씩 가산 - 격무부서 : 체육진흥계, 교통관리계, 교통지도계 - 가점대상자 : 계장 및 계 부서원 전체	2점한도	
파견 가점	○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청도통상사무소 파견 - 6월 이상 근무자 0.5점 - 1월 초과 매 6월마다 0.5점씩 가산	2점한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평정시기) ① 5급이하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이하 "5급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조(평정시기) ① 5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4월30일과 10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에 대하여는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③----- 6월30일과 12월31일----- ----- ----- ----- ----- ----- ----- -----.
제4조(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① 6급이하 일반직·지도사·기능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자는 관·과·소장, 읍·면·동장이 되고, 확인자는 해당 국·소장이 되며,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자는 해당 국·소장이 되고 확인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단, 직속부서(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의 6급이하 일반직·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자는 해당관장이	제4조(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① 6급이하 일반직·지도사 및 별정직 공무원----- ----- ----- ----- ----- ----- ----- 6급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

근무자에 대하여는 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근무자----- -----.
제16조(실적가점 부여) ① (생략)	제16조(실적가점 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실적가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할 경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② ----- -----제27조제3항 ----- -----.

[별표 4]

실 적 가 점 기 준 (제11조 관련)

[현행]

항 목	세 부 항 목	가 점	비 고
예산절감 유 공	○ 제도·기술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 5억원 이상 - 1억원이상 - 5억원미만 - 3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1.0 0.8 0.4	
창안제도 우 수	○ 직무와 관련하여 창안상을 수상한자 - 대통령 이상 - 국무총리 - 장 관 - 도 지 사 - 시 장	1.0 0.6 0.4 0.3 0.2	
업무추진 유 공	○ 소관업무 관련 기관표창 수상한 부서 (담당 및 담당자 각 1명) - 중앙 단위 · 최 우 수 · 우 수 - 도 단위 · 최 우 수 · 우 수 - 시 단위 · 최 우 수 · 우 수 ○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에 기여한 자 (담당 및 담당자 각 1명) - 예산 확보(국도비) 5억원 이상 1억원이상 - 5억원미만 3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0.8 0.6 0.6 0.4 0.4 0.2 1.0 0.8 0.4	
기피·현안 부서근무 가 점 제	○ 기피·현안부서, 통상사무소 파견 ※ 부서 담당 및 소속 부서원 전체 - 1년이상 근무자 0.5점 - 1년초과 매6월마다 0.5점씩 가산 - 최고 2점 한도내 부여 · 기피부서 : 체육진흥, 교통관리, 교통지도담당 · 현안부서 : 인재양성, 투자유치, 관광진흥담당 · 파견기관 : 군산시 청도 통상사무소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파견 - 6월이상 근무자 0.5점 - 1월 초과 매6월마다 0.5점씩 가산	2점한도	

[별표 4]

실 적 가 점 기 준 (제11조 관련)

[개정]

항 목	세 부 항 목	가 점	비 고
예산절감 유 공	○ 제도·기술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 5억원 이상 - 1억원이상 - 5억원미만 - 3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1.0 0.8 0.4	
창안제도 우 수	○ 직무와 관련하여 창안상을 수상한자 - 대통령 이상 - 국무총리 - 장 관 - 도 지 사 - 시 장	1.0 0.6 0.4 0.3 0.2	
업무추진 유 공	○ 소관업무 관련 기관표창 수상한 부서 (계장 및 담당자 각 1명) - 중앙 단위 · 최 우 수 · 우 수 - 도 단위 · 최 우 수 · 우 수 - 시 단위 · 최 우 수 · 우 수 ○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에 기여한 자 (계장 및 담당자 각 1명) - 예산 확보(국·도비) ·50억원 이상 ·40억원이상~50억원미만 ·30억원이상~40억원미만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1억원이상~20억원미만	0.8 0.6 0.6 0.4 0.4 0.2 1.0 0.8 0.6 0.4 0.2	
격무부서 근무 가점	○ 격무부서 근무 - 1년이상 근무자 0.5점 - 1년초과 매6월마다 0.5점씩 가산 - 격무부서 : 체육진흥계, 교통관리계, 교통지도계 - 가점대상자 : 계장 및 계 부서원 전체	2점한도	
파견 가점	○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청도통상사무소 파견 - 6월이상 근무자 0.5점 - 1월 초과 매6월마다 0.5점씩 가산	2점한도	

군산시 공고 제2014-303호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자체기금의 일몰제 적용 의무화(2013.3.23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이외의 자체기금은 존속기한 명시(일몰기한 : 5년)

나. 심의위원회의 심의강화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채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관련 조례 개선 권고

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비

새 정부 국정과제 ('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달성)의거

「여성발전기본법」 개정('13.7.2국회통과,'13.8.13공포, '14.2.14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정비

2. 주요내용

가. “시정참여의확대”를 “시정참여”로 변경하고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제고를 위한 기반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6조)

나. “여성의 복지증진”을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으로 하여 용어정비하고자 함 (안 제8조)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 권고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비 등 항목 신설
(안 제13조의2)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 항목 신설(안 25조의 2)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여성아동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전화063-454-3213, 팩스063-452-94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아동복지과 여성정책계(전화 063-454-3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역에 있어서”를 “영역에서”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성정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중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보호가 필요한 여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시정참여의 확대)”를 “(시정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시정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여성의 복지증진)”을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성매매 피해여성 등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및 결혼이주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직업훈련·자립생활 및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그 밖의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의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정으로”를 “사유로”로, “없을”을 “없는”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후단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을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를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시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금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12월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제2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신설규정은 201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 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군산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u>영역에 있어서</u>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영역에서</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여성단체”란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정책”이란 <u>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정책</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제3조제2호에 따른</u> -----. 3. <u>“여성정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책</u> 을 말한다.
제3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제3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 ----- ----- -----

현 행	개 정 (안)
<p>라 한다)제5조</p> <p>제3항에 따라 연도별 여성정책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주요여성정책</p> <p>가.·나. (생략)</p> <p>다. <u>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u></p> <p>라.·마. (생략)</p> <p>4.·5. (생략)</p> <p>② (생략)</p>	<p>-----</p> <p>-----</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보호가 필요한 여성</u>-----</p> <p>-----</p> <p>라.·마. (현행과 같음)</p> <p>4.·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6조(시정참여의 확대) 시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 시행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 이상의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6조(시정참여)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u></p> <p><u>② 시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시정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8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가족유형·지역·연령 등에 따른 연령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u></p>	<p><u>제8조(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성매매 피해여성 등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을</u></p>

현 행	개 정 (안)
<p><u>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미혼모, 성매매 피해여성 등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장애인 및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자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u></p> <p><u>④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및 결혼이주 여성의 평등한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직업훈련·자립생활 및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u></p> <p><u>④ 시장은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그 밖의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p><u>제13조의2(의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u></p> <p><u>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u></p> <p><u>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u></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u>사정으로</u>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생략)</p> <p>제16조(회의) ①·② (생략)</p> <p>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u> 예외로 한다.</p> <p>④ (생략)</p> <p>제24조(기금관리·운용) ①·② (생략)</p> <p>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의 <u>당해연도</u> <u>이자수입 범위</u>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수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p>	<p><u>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u></p> <p>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 <u>총괄한다.</u></p> <p>② ----- ----- <u>사유로</u> ----- ----- <u>없을</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있으면 -.</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4조(기금관리·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u> ----- ----- -----.</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시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금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군산시 공고 제2014-305호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2010.9.15제정. 조례 제944호)가 제정됨과 동시에 목적과 관련된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 조례」가 폐지됨 따라 정비하고자 함.

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군산시여성발전기금운용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을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관련 조례명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다. 조례 제3조1항에 규정된 사항을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 양성평등에 따라 공익여성단체를 공익단체로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

라. 신청서류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을 신설하여 관리하고자 함.
(안 제3조제1항)

마. 적정성을 적정여부로 수정하여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안 제3조2제2항)

바. 정산서 등의 제출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하여 신속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7조)

사. 준용에서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삼입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여성아동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전화063-454-3213, 팩스063-452-94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아동복지과 여성정책계(전화 063-454-3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군산시여성발전기금운용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를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군산시여성발전기금에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3조 1항에 규정된 사업”을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익여성단체”를 “공익단체”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단체.법인포함)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단체나 법인(이하 이조에서“기금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를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로, “한다)의 심의”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적정성”을 “적정 여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적정성”을 “적정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제3조제2항제4호 중 “사업비 부담금”을 “자기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신청자의 최근”을 “기금신청자의 최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신청인”을 “기금신청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한도)”를 “(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범위 안으로 하며,”를 “범위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한다.

제5조 중 “자가 기금”을 “단체나 법인은 기금”으로, “사업과 기금”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 또는 법인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반납하여야”를 “따라 반납하여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를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로, “기금운용 사항”을 “기금운용사항”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군산시여성발전기금운용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u>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u> 」에 따라 <u>군산시 여성발전기금</u> 에 필요----- -----.
제2조(지원대상)	군산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u>조례 제3조 1항에 규정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단체나 법인</u> 으로 한다. 1. <u>군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공익여성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u> 2. (생략)	제2조(지원대상)	----- -----	「 <u>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u> 」(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각 호----- -----. 1. ----- <u>공익단체</u> ----- 2.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단체, 법인포함)는 <u>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1. ~ 3. (생략)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	<u>단체나 법인(이하 이조에서 “기금신청자”라 한다)</u> 은 <u>별지 제1호서식</u> ----- -----.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u>군산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u>적정성</u> 2. 지원사업 내용의 <u>적정성</u> 3. 금액산정의 <u>적정성</u> 4. <u>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 여부</u> 5. <u>신청자의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u> <p>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u>신청인에게</u>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조(<u>지원한도</u>) 지원금은 기금의 <u>이자수입금 범위 안으로</u> 하며, <u>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u> 지급한다.</p> <p><u><신 설></u></p> <p>제5조(<u>사업계획변경 등</u>) 기금을 지</p>	<p><u>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u></p> <p>② ----- 제1항에 따른 ----- ----- <u>각 호의</u> <u>사항을 조사·검토한 후</u> ----- ----- <u>한</u> <u>다</u>)에 상정하여 심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적정 여부</u> 2. ----- <u>적정 여부</u> 3. <u>금액산정의 적정 여부</u> 4. <u>자기자금</u>----- 5. <u>기금신청자의 최근</u> ----- ----- <p>③ ----- 제2항에 따라 ----- ----- <u>기금신청자</u> ----- -----.</p> <p>제4조(<u>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한도</u>)</p> <p>① ----- <u>범위</u> <u>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 -----.</p> <p>② <u>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지원금</u> <u>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u> <u>을 위하여 재적립한다.</u></p> <p>제5조(<u>사업계획변경 등</u>) -----</p>

현 행	개 정 안
<p>원 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u>사업과 기금</u>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단 신설></p>	<p>----- <u>단체나 법인은 기금</u>----- ----- <u>사업</u>----- ----- ----- . <u>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u></p>
<p>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u>기금을 지급 받은 자(단체.법인)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사업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당해 목적 사업 종료 30일 이내</u> 2. <u>기금의 지원 정지 또는 기금 회수결정을 받은 때</u> 3. <u>회계연도가 종료한 때</u> <p>② <u>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u></p>	<p>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u>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 또는 법인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 <u>제1항에 따른</u>----- ----- <u>따라 반납하여야</u>----- ----- .</p>
<p>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u>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 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p>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 ----- <u>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u>----- ----- <u>기금운용사항</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p>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p>	<p>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p>

현 행	개 정 안
<p><u>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u></p>	<p><u>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u></p>

군산시 공고 제2014 -321호

공 고

우리시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군 산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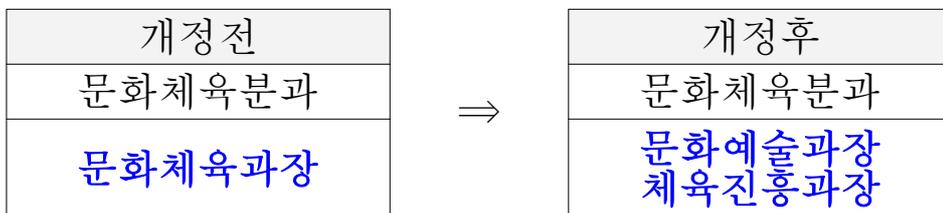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리시 조직개편과 시 행정 변화에 따라 군산시발전협의회 구성 체계 및 직무가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1) 협의회 구성 체계 및 직무
 - 문화체육분과 간사변경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5F
(☎ 063-454-2333, FAX:452-8157)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 창의분권계(☎ 063-454-2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규칙 제 호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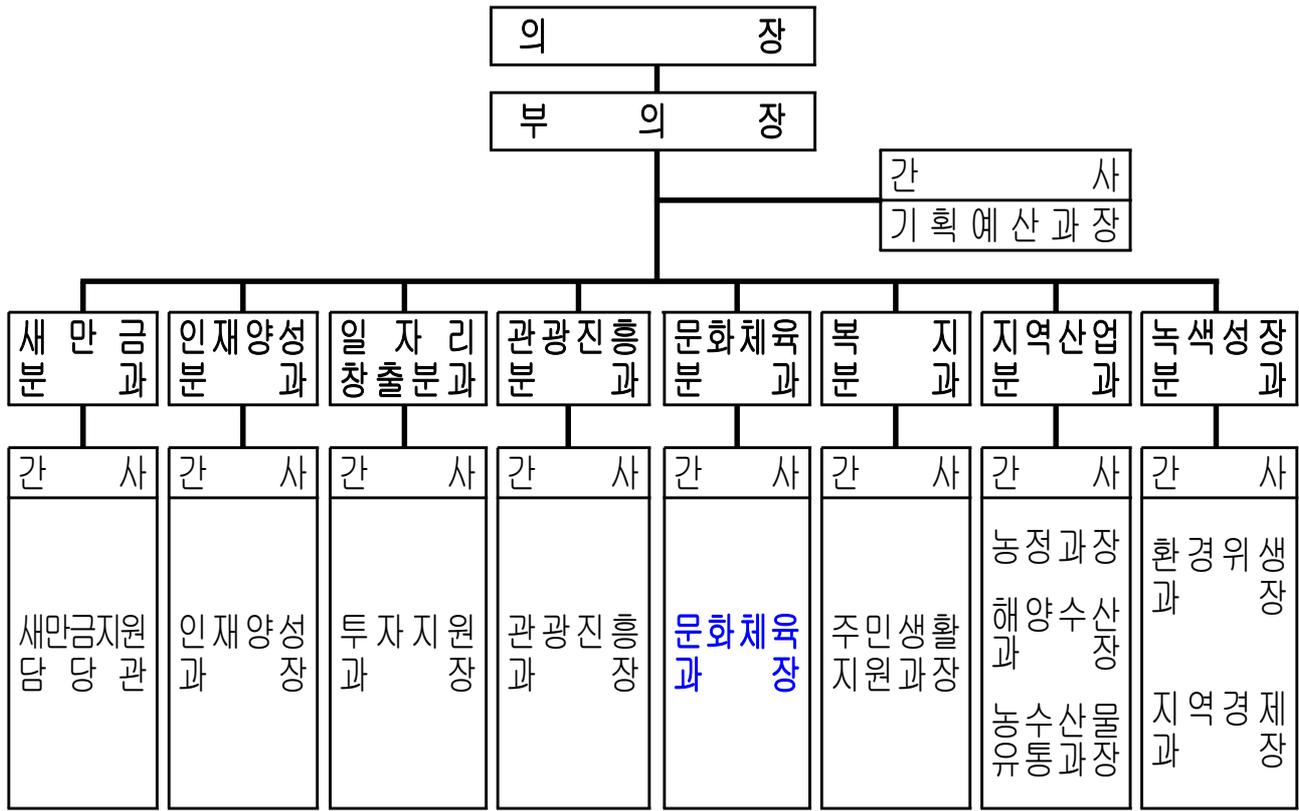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의회 구성 체계 및 직무

구성체계 : 8개 분과 - 50명 이내



분과별 직무

새만금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자원 활용 군산발전방안 연구 • 새만금사업 등 법률자문 • 새만금산업 인프라 전략수립
인재양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양성, 교육환경개선, 평생학습도시조성 등 교육지원 사업연구 개발 • 중장기 교육진흥사업 연구개발
일자리창출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일자리 발굴육성 •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관광진흥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축제개발 • 중장기 관광산업 육성방안 연구
문화체육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인프라구축 • 체육진흥을 위한 방안 연구개발
복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방안 모색 •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전략수립
지역산업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경쟁력향상 사업 발굴 • 중장기 지역산업 육성방안 연구 • 농수산물 브랜드강화 방안연구
녹색성장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정책 자문 •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지원 • 녹색성장 및 과학기술산업 육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구성 체계 <문화체육분과> 간사 : <u>문화체육과장</u></p>	<p>○ 구성 체계 <문화체육분과> 간사 : <u>문화예술과장</u> <u>체육진흥과장</u></p>

군산시 공고 제2014-322호

군산시 물놀이 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하고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물놀이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 정비·확충, 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게시,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8조)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배치기준, 운영기간, 근무시간, 임무, 복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5조)

- 안전관리요원 자격기준, 모집·선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제18조)
- 물놀이 대응계획 수립, 휴일비상근무, 현장점검반, 상황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제24조)
- 안전시설 설치비,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5조~제27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참조: 재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
- 전 화: 063-454-3842, 팩스 063-454-38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재난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신혜미
- 전 화: 063-454-3842
- 이메일: cp8433@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에 기재되어있습니다(행정정보⇒ 알림마당⇒입법예고)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군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건너는 도중의 사고,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기타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 조사된 지역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DB

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시장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복제)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7조(모집·선발) 시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 TF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의한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 등은 시장이 제 22조에 의한 현장 조사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의해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의한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

보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의한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스마트폰, 아이폰
4. 인터넷, 트위터, 아고라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경보시설 등

부칙 <제00호, 2014.00.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 2014-334 호

공 고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 현실에 맞는 시립예술단 복무 및 특별휴가 개정을 통해 사기 진작과 화합 도모
- 일부조항 개정을 통해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적 관리 도모

□ 주요내용

- 복무조건 완화 및 특별휴가 기준 확대
 - 평일 야간공연시 익일 오전 휴무 또는 체력단련시간 제공
 - 대단위 예술활동의 성공적 수행 및 성과 거양시 연 3일 이내의

포상휴가 제공

➤ 「블라인드 실기평정」 규정 삭제

○ 6개월 미만의 무급 질병휴직 명시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전화:454-3284, FAX:454-3269)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454-3284)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임단원”을 “단원”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연주실기평정은 블라인드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를 “연주실기평정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단원”을 “상임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야간 정기(기획)공연 다음날 오전은 휴무 또는 체력단련 시간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휴가 및 연가)”를 “(연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조사별 휴가 및 연가 일수표는 별표 5 및”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한다”를 “구분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0일”을 “연 6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단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단장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3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공연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예술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단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11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 ① 단원은 만6세이하 취학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단장의 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의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신체·정신상의 장애 및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단장의 허가를 득한 후 6개월 미만의 무급 질병휴직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상임지휘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 ①·② (생략)</p> <p>③ <u>상임단원</u>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2. (생략)</p>	<p>제4조(상임지휘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단원</u>----- -----.</p> <p>1.·2. (현행과 같음)</p>
<p>제6조(정기평정) ① ~ ③ (생략)</p> <p>④ <u>연주실기평정은 블라인드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u> 외부전형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중 비공개 선정한다.</p>	<p>제6조(정기평정)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 <u>연주실기평정시</u>----- ----- -----.</p>
<p>제7조(복무) ① (생략)</p> <p>② <u>단원</u>이 입단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한다.</p> <p>③ ~ ⑤ (생략)</p> <p><신설></p>	<p>제7조(복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상임단원</u>-----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야간 정기(기획)공연 다음날 오전은 휴무 또는 체력단련 시간 등으로 할 수 있다.</u></p>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휴가 및 연가) ① 상임단원의 경조사별 휴가 및 연가 일수는 별표 5 및 별표 7과 같고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제외한다.</p> <p>② (생략)</p>	<p>제8조(연가) ①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휴가의 종류)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p>	<p>제8조의2(휴가의 종류) ----- ----- 구분한다.</p>
<p>제9조(병가)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한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신설></p>	<p>제9조(병가) ① ----- ----- 연 60일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u></p>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특별휴가) ① (생 략)</p> <p>② 단원은 만6세이하 취학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단장의 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의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1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 음)</p> <p>② 단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에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③ 단장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3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p> <p>1. 대단위 행사와 공연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p> <p>2. 예술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단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p>
<p><신 설></p>	<p>제11조의2(휴직) ① 단원은 만6세 이하 취학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단장의 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의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p> <p>② 단원은 신체·정신상의 장애 및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단장의 허가를 득한 후 6개월 미만의 무급 질병휴직을 할 수 있다.</p>

군산시 고시 제2014-1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2. 19.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문화동 셀브르타운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회사명/대표 : (주)종수가 / 대표 : 오인권
 -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182, 운정빌딩 4층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군산시 문화동 916-7,6,13
 - 나. 대지면적 : 994.7m²
 - 다. 건축면적 : 384.8m²
 - 라. 연 면 적 : 2,370.78m²
 - 마. 건축규모 : 아파트1동 8층, 28세대
 - 84.2545형(전용면적 : 59.7202m²) : 21세대
 - 86.6950형(전용면적 : 61.4500m²) : 7세대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사업비 : 3,700,000천원
 - 아. 사업기간 : 2013. 05월 ~ 2014. 02월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사업계획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준공예정일	2014.05.01	2014.02.28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130인용 설치	시 오수관 직결	
주차장 출입구 포장재료	보도블럭 포장	아스콘 포장	
기 타	승강기 기계실 설치	삭제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3)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4 - 19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2. 20.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대명 현대메트로타워2차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1) 명 칭 : (유)현대주택건설
 - 2) 대표자 : 조성석
 - 3)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101호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385-1번지의 37필지
 - 나. 주택구분 :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 나. 대지면적 : 26,247.1000m²
 - 다. 건축면적 : 18,746.9723m²
 - 라. 연 면 적 : 145,976.4663m²
 - 마.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 30~40층, 아파트 5동 942세대
 - 전용 84.9800m² 308세대
 - 전용 84.9648m² 316세대
 - 전용 84.9303m² 318세대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 업 비 : 169,459,600천원

아. 사업기간 : 2013. 2. ~ 2016. 9.

4. 사업계획 주요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주체	(유)현대주택건설	변 경 없 음	
건축위치	군산시 대명동 385-1외	변 경 없 음	
대지면적	26,212.00m ²	26,247.10m ²	증 35.10m ²
사업기간	2012. 10 ~ 2015. 11	2013. 02 ~ 2016. 09	증 6개월
사 업 비	169,459,600천원	변 경 없 음	
건축면적	5,738.7385m ²	18,746.9723m ²	증 13,008.2338m ²
연 면 적	166,179.0397m ²	145,976.4663m ²	감 20,202.5734m ²
건 폐 율	21.89%	71.42%	
용 적 율	419.77%	424.05%	
주 차 장	총 1,477대	총 1,205대	

5. 설계도서 : 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일 : 2014년 2월 17일

7. 주택법 제17조 1항에 의한 고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등

8.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1	현대메트로타워2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대명동 385-1번지일원	26,990	증)26.2	27,016.2	

나.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정 사유
변경	31	군산시 대명동 385-1번지 일원	○면적변경 - 26,990㎡ → 27,016.2㎡ (증 26.2㎡)	지적분할에 의한 확정면적으로 정 정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실음생략)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BL	26,990	증)26.2	27,016.2	1- ①	대명동 385-1번지 일원	26,212	증)35.1	26,247.1	공동주택용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1- ②	경암동 371-6번지 일원	462	감)6	456	도로용지
					1- ③	대명동 385-91번지 일원	316	감)2.9	313.1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경	
	1-①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폐율	○25% 이하	○80% 이하	법정 9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450% 이하	법정 1,000% 이하
		높 이	○「건축법」제60조에 따름	○「건축법」제60조에 따름	

라.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 2014 - 20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2. 20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조촌동 에코리움아파트
2. 사업주체 (변경없음)
 - 1) 명 칭 : (주)미르건설
 - 2) 대표자 : 김종권
 - 3)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2-4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952-1번지
 - 나. 주택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
 - 나. 대지면적 : 3,125.7000m²
 - 다. 건축면적 : 760.8360m²
 - 라. 연 면 적 : 6,101.5045m²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2동 12층, 64세대
- 전용 71.6965m² 64세대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사 업 비 : 9,530,060천원
4. 사업기간 : 2014. 02. 03 ~ 2015. 05. 30(**변경없음**)
5.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6. 사업계획 **변경** 승인일 : 2014년 02월 17일

7. 변경승인 주요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전		비 고
사업주체	(주)미르건설		변 경 없 음		
건축위치	군산시 조촌동 952-1번지		변 경 없 음		
대지면적	3,125.70m ²		변 경 없 음		
사업기간	2013. 02 ~ 2015. 05		변 경 없 음		
사 업 비	9,530,060천원		변 경 없 음		
건축면적	758.4044m ²		760.8360m ²		감 2.4316m ²
연 면 적	5,797.8110m ²		6,101.5045m ²		증 303.6935m ²
건 폐 율	24.26%		24.34%		
용 적 율	185.48%		195.20%		
주택공급	계	60세대	계	64세대	
	70.7903	60세대	71.6965	64세대	
주 차 장	총 60대(지상60)		총 64대(지상64)		

8.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4 - 21호

어장관리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군 산 시 장

2014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 및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하고자 우리시 관할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데 있다.

제2조(시행기간)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 기간은 2014년 1년으로 한다.

제3조(대상어장) ① 「어장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정에 따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수면

②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수산업법시행령 제 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육상종묘생산어업 제외)에 의한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

③ 어장과 어장사이의 수면 등 어장 주변의 공유수면

제4조(계획의 주요 내용)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① 어장정화·정비 및 어장관리해역 지정·운영
- ② 정부지원 어장정화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③ 어장환경실태조사 및 해역별 어장환경개선계획
- ④ 기타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한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 기여하고자 계획수립

1.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어장관리해역지정을 통한 해역별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
- 오염해역 및 오염이 우려되는 해역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 국고보조사업 중 어장정화·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 어장 여건 및 어장정화·정비 등을 감안한 어장 재배치
- 어업권자의 어장관리의무 이행을 확행
- 지방자치단체장의 폐어구 수거·처리장소 설치 운영

2. 법적 근거

- 어장관리법 제14조(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의 수립 등)
- 어장관리법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등) 및 동법 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3. 대상 어장

- 「어장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업법」 제8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수면
-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41조제3호에 의한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
- 어장과 어장사이의 수면 등 어장 주변의 공유수면

4. 2014년도 어장정화 추진계획

가. 정화대상 어업권 현황

(단위 : ha)

구 분	건 수(면적)	대 상	제 외	비고	
합 계	172 (5,907.07)	95 (3,308.5)	77(2,598.57)		
면허 어업	해조류	43 (3,733.0)	27 (2,068.0)	16(1,665.0)	제외어업권은 '12년~13년 청소실시 (3년마다1회)
	패 류	56 (899.0)	17 (340.0)	39 (559.0)	
	어류 등	9 (117.57)	3 (33.0)	6 (84.57)	
	복 합	4 (136.0)	4 (136.0)	-	
	마을어업	60(1,021.5)	44 (731.5)	16 (290.0)	

※ 어장청소 주기

- 어업면허·허가(기간연장 허가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실시하고
그 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기 간 : 2014. 4월 ~ 12월 까지

○ 청소방법 : 어업권자별로 어장여건을 감안하여 청소 실시

○ 실적제출 : 어장청소 후 추진실적을 증빙자료(사진 포함) 첨부하여 우리시 제출

○ 기 타

- 어업권의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어업시기 종료된 어장 시설물은
어업권자 자진철거 조치

나. 어장주변 수역 정화 (도 어장정화선)

○ 대상수역 및 면적 : 4개 수역 / 800ha

시군별	수역별	정화면적	소요일수	작업기간
합계	4개 수역	800ha	40일	8~11월중
군산시	○ 옥도면 방축도 지선 35-50-18, 126-22-04 35-50-18, 126-23-23 35-49-47, 126-23-23 35-49-47, 126-22-04	200ha	40일	8~11월중
	○ 옥도면 무녀도 지선 35-47-42, 126-26-00 35-47-10, 126-27-10 35-46-47, 126-26-52 35-47-13, 126-25-40	200ha		
	○ 옥도면 관리도 지선 35-47-07, 126-22-35 35-46-20, 126-23-30 35-45-58, 126-23-01 35-46-45, 126-22-07	200ha		
	○ 옥도면 비안도 지선 35-45-41, 126-24-12 35-45-19, 126-24-39 35-44-32, 126-23-45 35-44-54, 126-23-17	200ha		

○ 정화기간 : 8월 ~ 11월중(40일 정도)

○ 정화선박 : 전라북도 어장정화선단 2척(전북901호 및 902호)

○ 정화작업내용

- 해저 침적 각종 오폐물(폐양식 기자재, 폐어망 등)수거 및 경운
- 불가사리 등 구제

○ 기 타

- 수거된 폐기물을 우리시에서 인수받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처분
(1,900천원 처리비용 확보)

다. 정부지원 어장정화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어장의 장기이용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병해발생 등 어업피해가 빈발한 어장
- 해상 유류사고 등으로 저질 및 주변 수역이 오염된 어장
- 어장이 불규칙하게 개발되고 시설물이 과다 설치되어 어장의 생산성 저하 및 관리가 곤란한 어장
- 육상기인 오염물 유입이 심하여 어업권자의 어장의 관리의무 중 어장청소로 퇴적물의 처리가 곤란한 어장
- 기타 정화정비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어업면허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어장

5. 양식어장 정화사업 세부추진계획

가. 일반 양식어장 중심에서 주 오염해역 중심으로 사업 추진

- 육상기인 오염물질 유입이 심화되는 지역의 어촌계 등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시행 (다만, 다수 어장이 설치된 해역으로 정화선박을 이용하여 정화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개인 어장과 주변수역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
- 어장정화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가능한 대상어장을 집단·광역화 하여 실시
- 어장여건과 양식 품종에 맞춰 퇴적물 수거, 경운, 객토, 준설 등의 세부사업을 균형 있게 시행
- 어업권의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어업시기가 종료된 어장의 시설물은 어업권자가 이를 철거하도록 조치하고 철거의무가 면제된 시설물은 시장 철거 조치

나. 양식어장 시설물 재배치는 해역별 환경용량, 어장정화사업의 일제 실시 등을 고려, 양식품종 및 시설규모 등 조정

- 어장정화정비 후 시설물을 재배치할 경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처분
- 어장시설물 재배치 완료 후에는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지속조사·조치
- 어장시설물 재배치시 부자를 교체하는 경우 개량부자 사용 권장

다. 양식어업권자에 대한 어장관리 의무 이행 조치

- 어장청소의무 안내 및 청소 확인, 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청소 확인 같음
- 청소의무 이행여부를 정기적 점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어업권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어구 및 양식 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해서는 안되며, 시장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치(존치) 금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라. 양식어장 불법행위 지속 단속

- 어장정화정비로 인양된 오·폐물, 유기산 사용 용기 등은 재 투기 등에 의한 2차 오염 발생치 않도록 조치
- 양식장 무면허 시설 및 법정시설기준 초과 설치, 무기산 등 유해약품 사용 단속 실시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 유실예방 및 투기금지 홍보

마. 어업여건 및 어장의 특성 등을 감안,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아래의 일정 수면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

- 과다 개발되어 어업활동, 어장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장
- 각종 어장시설물이 밀집되어 어장의 위치 등 어업인간 분쟁이 발생하는 어장

- 장기간의 양식으로 잦은 병해발생, 상습 어업재해 발생 등 정상적인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어장
 - 어장과 주변수면 오염물 다량 퇴적으로 어장정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어장
 - 어업인 자술에 의하여 어장관리 의무이행이 곤란할 정도로 어장 환경이 악화되거나 다수의 어업인이 지정을 요청하는 어장
 - 기타 어장관리를 위하여 적정 조치가 필요한 어장

바. 어업인이 폐어구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장소 지정·운영
(어업인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장소 선정)

□ 어업인 지도홍보

- 어업권의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어업시기가 종료된 어장의 시설물은 어업권자 자진 철거
- 어장정화정비 후 시설물을 재배치하는 경우에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반영 시행
- 어장시설물을 재배치할 때 부자를 교체하는 경우 개량부자 사용
- 청소의무 이행하지 않는 어업권자의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
- 어업활동 중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 철거 관리
(폐어구 등의 투기 또는 방치 금지)
 - 인양된 오폐물, 유기산 사용용기 등 재투기에 의한 2차 오염 발생치 않도록 조치
-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 규격화
 - 대 상 : 2008.12.28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

- 규격 제품

- 발포 부표(폴리스타일렌 부표) : 고밀도($0.02\text{g}/\text{cm}^3$ 이상) 제품
- 비발포 부표 :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하거나 피복된 제품
- 친환경 개량 부표 :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한 어업인 보급 부표

※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표규격 표시

□ 행정 사항

- 어업권자에게 어장청소를 실시한 후 청소실적 제출 지도
- 어업인 교육 및 회의시 어장청소 실시 지도·홍보
(어장정화정비사업 포함)
- 청소의무 이행하지 않는 어업권자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

군산시 고시 제2014 - 22 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3 월 일

1.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 장 (k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제1송전선로	구암동	개정동	-	3.515	-	건고228 (86.5.23)	
변경	1	제1송전선로	구암동	개정동	-	3.527	-	건고228 (86.5.23)	케이블 헤드부지 667㎡ 포함

2.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송전선로)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제1송전선로	· 기 점 : 구암동 · 연 장 : 개정동 · 연 장 - 기 정 : 3.515km - 변 경 : 3.527km (증:0.012km)	· 송전선로와 송전선로의 지중화 구간 개설에 따른 케이블 헤드 설치와 송전선로 선형 변경

3.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4-23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3. 3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21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12건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10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4-294호

2014년 통합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2014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2014년 통합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해당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대상지 선정 통보 및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산주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군 산 시 장 (인)

1. 사업명 : 2014년 통합숲가꾸기사업
2.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대시켜 쾌적하고 각종 재해에 강한 산림을 가꾸고자 함.
3. 면 적 : 172.47ha
4. 사업면적 : 81ha
5. 사업내용 : 천연림보육개량, 숲아베기(간벌),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임내정리 등
6. 사업대상 : 붙임 필지별 조서 참조
7. 사업기간 : 2014. 03. ~ 06.
8. 공고기간 : 2014. 02. 21. ~ 2014. 03. 12.(20일간)
9. 공고에 따른 조치 사항 :
 - 가. 공고기간 중 대상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 동의여부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 나. 위 공고기간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게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0. 기타사항 : 사업대상지·내용 및 면적은 향후 사업추진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통합숲가꾸기사업 대상지내역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군산시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 454-29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4년 통합숲가꾸기사업 대상지 내역 1부.

군산시 공고 제 2014 - 319 호

공 고

＝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7일

군 산 시 장

가. 공람기간 : 2014.03.10. ~ 2014.04.11.

나. 공람공고 : 군산시보 및 군산시청 홈페이지

다. 공람장소 : 군산시청(2층) 건축과 (☎ 063-454-3712)

군산시 나운1동 주민자치센터(☎ 063-454-7683)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63-461-2563)

라. 의견제출 장소 : 군산시청(2층) 건축과

마. 공람내용 : 『별첨』 참조

바. 관계도서 : 공람 장소에 비치

사. 기타 공지사항

－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 장소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관계도서는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같음함.

－ 위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변경없음**”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 일원	37,173.6	

※건축대지 : 33,601㎡, 공공용지 : 3,572.6㎡ (도로, 경찰 파출소 용지)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개설면적(㎡)	비 고
설 치 (기부채납)	중로1-74	1,403.8	
	소로1-313	454.6	
	소로1-314	320.4	
	소 계	2,178.8	도시계획도로

가.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74	22 ~ 25	집사 도로	213	나운동 831-1 대3-2	나운동 875 중2-72	일반 도로		전북고시 172 (09.6.5)	
기정	소로	1	313	10	국지 도로	235	나운동 830-5 대3-2	나운동 829-6 소2-117	일반 도로		전북고시 172 (09.6.5)	
기정	소로	1	314	10	국지 도로	160	나운동 832-1 소1-313	나운동 832-11 중2-72	일반 도로		전북고시 172 (09.6.5)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구 분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부대시설	휴 게 시 설	3개소 이상 설치		3개소 이상 설치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1,050㎡(350㎡ 3개소)	증) 193	1,243㎡ 이상
		주민운동시설	690㎡(230㎡ 3개소)	증) 80.21	770.21㎡ 이상
		경 로 당	120.5㎡(1개소)	증) 4.76	125.26㎡ 이상
		주민공동시설	680㎡(1개소)	감) 269.43	410.57㎡ 이상
		문 고	105.2㎡(1개소)	감) 23.3	81.90㎡ 이상
		영유아보육시설	175.5㎡(40인 이상 수용)	증) 20.27	195.77㎡ 이상

* 변경사유 : 건축심의 결과 반영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위 치	구 분	정 비 계 획	비 고
A-㉠	주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2호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폐율	• 25% 이하	
	용적률	• 270% 이하	
	높이	기정	• 25층 이하
변경		• 26층 이하	
A-㉡	주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3호 바목의 경찰관파출소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15층 이하	

* 변경사유 : 건축심의 결과 반영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계획

검토햇목	계 획 내 용
지형·지질	• 충분한 조경면적 확보로 단지내 쾌적성 제고 및 투수성 공간 확보 • 사면발생시 경사를 절토구간 1:1.2 이상, 성토구간 1:1.5 이상의 완만한 구배로 조성하고, 조기녹화로 사면 안정화
대 기 질	• 공사시 부지경계부에 방진망 및 세운·세차시설 설치하고, 차량 속도제한 및 살수차량 운영 • 환경정화수종의 수목선정 식재
수 질	• 공사는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 • 공사시 토사유출 차감을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적정하게 설치·운영 • 우·오수의 처리는 분류식 및 자연유하방식으로 계획
폐 기 물	• 공사시 장비의 발생폐유는 일정장소에 보관후 위탁처리하고, 발생분뇨는 간이화장실 설치·수거후 위탁처리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주민차치에 의하여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
소 음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나. 재난방지계획

검토햇목	계 획 내 용
수해방지	• 단지내 적정 우수관망 확충 및 충분한 조경면적 확보
화재방지	• 소방동선의 확보 및 소방법 등 관련법규 준수
교통사고방지	• 단지내외 적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처리계획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조사항목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		
소음·진동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소음[dB(A)]	65 이하	50 이하
	진동[dB(V)]	70 이하	65 이하
미세먼지	• 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교통안전	• 학생이 정비구역으로 통학하게 되는 경우 - 사전거보행자 경용도로를 충분한 너이로 설치 -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

기정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
변경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

*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조정

9.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10.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사업지내 아파트 동수는 19개동이며,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

아파트 명칭	면적 (㎡)	위치	정비개량계획(아파트)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나운주공 2단지 아파트	37,173.6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 일원	19	-	-	철거 : 신축 19 → 10	

1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1) 도로

- 도시계획도로 외 도로설치사항으로 정비구역 주변 대로3-2호선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대로3-2호선 변에 폭3m의 도로용지 확보
- 단지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가감속 차로 확보

구분	설치개요	개설면적	비고	
대로3-2호선변	L=169m, B=3m	496㎡	정비구역내 대로3-2 접하는 부분 3m set-back으로 도로용지 확보	
중로1-74호선변	L=92m(테이퍼포함), B=3m	245㎡	단지 주출입구 중로1-74호선변 가감속차로 확보	
소로1-313호선변	기정	L=105m(테이퍼포함), B=3m	300㎡	단지 부출입구 소로1-313호선변 가감속차로 확보
	변경	L=78m(테이퍼포함), B=3m	204㎡	

* 변경사유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내용 반영

2) 상·하수도

•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추가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상수도 시설분담금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하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함

가) 상수도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 서측 대로3-2호선의 CIP φ800㎜ 상수관에서 분기하여 기존 소로1-64호선을 따라 CIP φ200㎜ 상수관이 기존에 매설되어 있음에 따라 • 기 매설된 CIP φ200㎜ 상수관에 CIP φ100㎜ 상수관(주철관)을 연결하여 단지내 지하물탱크실로 인입후 각 세대로 공급할 계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 서측 대로3-2호선의 CIP φ800㎜ 상수관에서 분기하여 기존 하나운2길을 따라 CIP φ200㎜ 상수관이 기존에 매설되어 있음에 따라 • 기 매설된 시 상수관에서 φ80~100㎜ 상수관을 연결하여 단지내 지하물탱크실로 인입후 각 세대로 공급할 계획

* 변경사유 : 상수관 인입 위치 변경 및 개소수 증가 등 건축계획 반영

나) 하수도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수의 처리는 단지내에 D200mm 우수관을 설치후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의하여 대상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매설이 계획되어 있는 D200mm~D250mm 우수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할 계획 우수의 처리는 단지내에 D400mm 우수관 및 우수맨홀을 설치후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의하여 대상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매설이 계획되어 있는 D450mm 우수관 및 우수맨홀에 연결하여 처리할 계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수의 처리는 단지내에 D300mm 우수관 및 우수맨홀을 설치후 대상지 주변 도시계획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기존 우수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처리 우수의 처리는 단지내에 D450mm 우수관 및 우수맨홀을 설치후 대상지 주변 도시계획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기존 우수관 및 우수맨홀에 연결하여 처리 할 계획

* 변경사유 : 관경 변경 등 건축계획 반영

3) 경찰관파출소

- 기존 소로1-64호선을 확폭(10m→22m)하여 중로1-74호선을 개설함에 따라 831-1번지 내 기존 경찰관파출소의 위치를 이동하여 부지확보 및 현재규모 이상으로 건축

현 황		설치내용	
부지면적	건축현황	부지면적	건축계획
40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경찰관파출소 건축면적(건폐율) : 126.02㎡(30.8%) 연면적(용적률) : 237.79㎡(58.2%) 층수 : 2층 	44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경찰관파출소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층수 : 15층이하

※ 경찰관파출소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타용도로 변경 가능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은 특별히 정하지 않음
다만,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배치계획을 수립함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변경없음”

- 본 사업지구의 지반고가 인근 도로 및 대지보다 다소 높아서 본 사업으로 인하여 홍수 등 재해발생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재건축사업에 의해 완전 철거하여 새롭게 재조성 될 경우 건축상태에 의한 재해위험 요소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14.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제1호) : “변경”

가 구	획지	면적(㎡)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A (37,173.6㎡)	㉠	33,505.0	증) 96	33,60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대지	
	㉡	1,403.8	-	1,403.8	중로1-74	도시 계획 도로	공공용지 (3,668.6㎡) ↓ 기부채납
	㉢	454.6	-	454.6	소로1-313		
	㉣	320.4	-	320.4	소로1-314		
	㉤	496.0	-	496.0	도로용지		
	㉥	300.0	감) 96	204.0	도로용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용적률완화 미적용 (993.8㎡)	
	㉦	245.0	-	245.0			
	㉧	448.8	-	448.8	경찰관파출소		

* 변경사유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내용 반영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14 - 2호

군산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군산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일

군 산 시 장

1. 공 고 명 : 군산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2.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및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3. 대상지역 :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전역
4. 단위단가 : 1,182,214 원/m³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포함)
- 행정절차법 제15조의 3항에 의거
6. 기 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법, 령, 규칙에 의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454-5453)에 문의 바랍니다.